

실버우대연금예금 특약

제1조【적용범위】

실버우대 연금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, 거치식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【예금과목】

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.

제3조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한한다.

제4조【저축한도 및 가입기간】

- ① 이 예금은 예금 가입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고 연금 지급기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분할 지급식 정기예금이다.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,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.
-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거치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하며, 거치기간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단위, 연금지급기간은 1년이상 2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각각 정할 수 있다.



제5조【예금의 지급방법】

- ① 이 예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발생된 이자를 원천징수 하여 원금에 합산한 후 원리금을 총 지급횟수로 균등 분할 한 금액(원리금분할액)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.
- ②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로 정할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원리금분할액과 매 연금회차의이자(원천징수액 제외)를 합한 금액이다.
- ③ 연금지급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.

제6조【기본이율】

- ①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만기일시 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거치기간내 금리변동주기를 1년, 2년, 3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,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.
- ③ 연금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1년만기(월이자지급식) 이율을 연단위로 적용한다.

제7조【우대이율】

① 거치기간에는 실버금리, 보너스금리, 우체국장전결 금리를 적용하며 연금지급기간에는 실버금리를 적용 한다.



- ②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- ③ 실버금리 : 만 50세 이상의 실버고객 연 0.1%p
- ④ 보너스금리: 다음 각 호에 해당시에 각 항목당 연 0.1%p씩 최고 연 0.3%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, 단 제2 호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 한 퇴직금(최소 1천만원 이상)에 한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4대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
 - 2. 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동 예 금에 예치하는 경우
 - 3.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
 - 4.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실적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
- ⑤ 우체국장전결금리 :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
 - ⑥ 우대이율은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을 재확인하여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 - ⑦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.



제8조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- ② 기본이율은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며 매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.
- ③ 우대이율은 금리변동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별로 재산정하여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적용한다.
- ④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및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에 각 우대이율 항목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.
 - 1. 「퇴직금 예치」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(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 일까지) 수령한 퇴직금(최소 1천만원 이상)에 한하며 퇴 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「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」은 신규가입시 증명서류(연금수령확인서,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)를 제출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(전산조회 기준일: 신규가입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)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.
 - 3. 「요구불예금 거래실적」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(신규가입일 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)로 한다.



4. 「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」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기준일은 최근 3개월(신규가입일 이 포함된 월의 전월 3개월)로 한다.

제9조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거치기간의 이자는 거치기간 종료일에 거치기간동안 발생된 이자(원천징수액 제외)를 원금에 가산한다.
- ② 연금지급기간의 이자는 연금지급기간 개시일부터 매연금회차별 연금지급액(원리금분할액 + 매연금회차이자 이자소득세)에 포함되어 연금지급주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. 여기서 연금지급기간 개시일은 거치기간 종료일을 말한다.
- ③ 연금지급일이 휴일(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 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동 입금한다.

제10조【이자계산】

- ①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(예치일수/365)을 곱하여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- ② 거치기간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 이율에 재 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금 리변동주기 단위로 복리 이자계산(세후복리)한다.
 - 1. 거치가간의 이자 = 원금 \times 적용이율(연) $\times \left(\frac{\text{에치일수}}{365}\right)$



- ③ 연금지급기간에는 매 1년 연금지급개시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실버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단리로 이자계산한다.
- 1. 매 연금회차 이자 = 매 연금회차 원리금잔액 × 적용이율 (연) × (역 365)

제11조【중도해지】

- ① 거치기간내 중도해지
 - 1. 금리변동주기 단위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주 기별 해당 적용이율(기본이율+우대이율)을 적용하며, 금리변동주기 단위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일 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 - 2. 중도해지 이자 = 원금 \times 중도해지이율(연) \times $\frac{@치일수}{365}$
- ② 연금지급기간내 중도해지
 - 1. 연단위 경과기간 : 연단위별 해당 적용이율(기본이율+실버금리) 적용
 - 2. 연단위 미경과 기간 : '연금지급개시일' 또는 '매금리주기변동 해당일'고시되는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『매 연금회차의 원리금잔액』에 대하여 셈하여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지급주기별 이자는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.



- 3.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산출방식
- o 중도해지이자 = 원리금잔액 × 중도해지이율(연) × 역시일수 365
 - o 지급액 = 원리금잔액 기지급 회차별이자 + 기지 급 이자소득세 + 회차별 중도해지이자 - 이자소득세

제12조【만기후해지】

매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액을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하므로 만기 후 이율은 없다.

제13조 【연금지급의 제한】

압류,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등록 계좌는 연금지급이 불 가하다. 다만, 지급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금지급이 가능하다.

제14조【세금관계】

- ① 일반과세,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 가능하다.
- ② 원리금 균등지급에 따른 원금 감소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초 지정한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한도 자동 감액 처리 한다.

제15조【기타】

①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(연금지급 개시일) 전에 1회에 한하여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.



- ② 이 예금은 만기일(최종 연금지급일)에 자동 해약된다.
- ③ 우수고객우대금리,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불가하다.
- ④ 이 예금은 분할인출,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